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국가숲길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국가숲길 운영·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국가숲길 운영·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기관의 전문인력과 시설 기준
(안 제20조의4 신설)

- 산림조합중앙회·산림조합, 공익법인 또는 법인 등의 기관이 대표자 포함 13명 이상(숲길등산지도사 60% 이상 보유) 인력과 사무실을 보유하면 국가숲길 운영·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4를 제20조의5로 하고,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4(국가숲길 운영·관리 업무의 위탁 등)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

가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

나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

다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

2. 별표 7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

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 운영·관리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

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7]

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(제20조의4 관련)

구 분	요 건
1. 인 력	법 제23조의4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가. 대표자를 포함하여 13명 이상으로 할 것 나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 등산지도사 자격증을 60프로 이상 보유할 것
2. 시 설	법 제23조의4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(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)할 것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0조의4(국가숲길 운영·관리 업무의 위탁 등)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</u> <u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</u> <u>가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</u> <u>나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</u> <u>다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</u> <u>2. 별표 7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</u> <u>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과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</u>

제20조의4(생략)

<신설>

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
고시한다.

제20조의5 (현행 제20조의4와 같음)
[별표 7]

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(제20조의4
관련)

구 분	요 건
1. 인 력	법 제23조의4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가. 대표자를 포함하여 13명 이상으로 할 것 나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을 60프로 이상 보유할 것
2. 시 설	법 제23조의4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(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)할 것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숲길등산레포트팀	
연 락 처	(042) 481 - 8876